

대구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1072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10724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33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무영, 이민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송민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B

피고, 피항소인2.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이희정

변론 종결 2024. 8. 14.

판결 선고 2024. 9. 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33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4.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D에 대한 위 500,000,000원 지급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삼았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기존의 주위적 청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위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피고 B, D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 D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D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금원(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예외적으로 피고 D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확장하지 않았고 청구 확장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 D는 2001. 9. 7.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B은 2003년경 피고 D를 인수하여 2003. 10. 16. 아내인 피고 C이 대표이사로, 2010. 7. 29.에는 피고 B 자신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며 피고 D를 운영하였다.

2) 피고 D는 E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F 대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3층짜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차용증 등의 작성

1) 원고와 피고 B은 2010. 9. 15.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인 각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15호증), 위 각서 하단의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B 주식회사 D'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옆에는 피고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다.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인 각서

J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합니다.

J에 대한 채무 400,000,000원

2010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일자: 2010년 9월 15.일

(수기 기재)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B

주식회사 D

연대보증인 I

2)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1. 10. 10.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차용증

차용금액 : 500,000,000원

채무자 성명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

1. 원금은 2014. 12. 31. 변제하기로 함.
2. 이자 납입은 매월 말일로 하고 이자금액은 원금의 연 24%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2011. 10. 10.

채무자 대표이사 B(D 인)

연대보증인 C(C 인)

3) 원고와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8. 30.자 이행각서도 작성하였다(갑 제6호증, 이하 '2015. 8. 30.자 이행각서'라 한다).

이행각서

1.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은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차용일: 2011. 10. 10.)
2. 채무자는 변제기일(2014. 12. 31.)에 변제를 하지 못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1층을 제외)과 웨딩 및 연회장 집기·비품 일체를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공증해주기로 한다).

작성자: 대표이사 B(D 인)

2015. 8. 30.

4) 원고와 피고 B은 2016. 12. 30.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

확약서

1.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을 이하 갑이라고 칭한다.
2. A(원고)을 이하 을이라 칭한다.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건물 1층 제외)과 웨딩 및 집기·비품 일체의 모든 권리를 을에게 위임한다.
4. 갑은 확약서 작성일로부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5. 갑은 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6. 갑은 소송에 관한 출장 경비를 을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7. 갑은 을에게 2018. 1. 1.부터 소송 및 연장 임대 종료시까지 매월 말일에 자문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8. 갑은 주식회사 D 법인의 총 수익금(임대수익금 포함)의 15%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9. 토지 소유주 E이 소송을 제기할 시 갑은 을의 동의 없이 협상 및 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모든 권리는 을에게 있으므로 을이 대행하기로 한다).

2016. 12 30.

갑: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D 인)

- 5) 원고와 피고 D는 2017. 12. 30. 위임인을 피고 D로, 위임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위임내용

1. 위임인(채무자) 피고 D는 모든 권한을 대리인(채권자)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2. 위임인 피고 D의 법인자산은 차용증과 유체동산 목록을 담보용으로 대리인 원고에게 위임하고 승계한다.
3. 위임인 피고 D 명의의 법인자산(집기비품을 포함한 유체동산)에 대한 매도, 투자, 임대, 증여, 교환 등 모든 행위를 대리인 원고에게 위임한다.
4. 대리인 원고는 권한 위임을 받음으로 민·형사, 법적 분쟁, 대응 등 모든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5. 대리인 원고는 권한 위임을 받음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한다.
- 6) 원고와 피고 D는 2018. 8. 29. G 법무법인 증서 2018년 제477호로 "원고는 피고 D에게 2011.

10. 10.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D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은 2016. 12. 31.까지로 하고 일시불로 변제한다. 이자는 연 24%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피고 D의 대표이사 변경 등

1) 피고 B은 2018. 9.경 피고 D의 대표이사 지위와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8. 9. 5.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한편,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식자재마트를 운영하였는데, 2018. 9. 30. 이 사건 건물 1층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으로 화재가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에 있는 시설과 집기들이 모두 전소되었다.

3) 피고 B은 위 2)항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금 수령 등의 문제로 원고로부터 피고 D의 대표이사 지위를 되찾고자 하였고, 2019. 2. 11. 원고로부터 D 주식과 대표이사 자리를 돌려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19. 2. 15.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행각서

1. 피고 B은 농작물 판매 총 수익금에서 1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 B은 총 수익금의 15%가 1억 원 미만일 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총 수익금의 15%가 1억 원 이상일시 15%를 지급한다.
3. 피고 B은 2019. 3. 30.까지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 불이행시 농작물 및 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양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0,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 3, 5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원고가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들에 대한 5억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피고 B이 아니더라도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J의 차용금 4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를 요청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2015. 8. 30.자 이행각서, 이 사건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들은 1)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가 피고 B 또는 피고 D라고 주장하는바,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갑 제4호증) 상단에 채무자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8. 30.자 이행각서(갑 제6호증)에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문서 하단의 '채무자' 또는 '작성인'에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 D의 법인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주체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D임이 그 기재상 명확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도 부여받은 점, ④ 원고는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차용증은 피고 B 개인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D로부터 받은 것이고, 공정증서에도 채무자가 피고 D로 되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D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의 성립

(1)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7,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 9. 15. 기준 J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4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는 원고와 사이에 2010. 9. 15.자로 'J의 채무 4억 원을 연대보증하고, 2010. 12.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 D의 위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차용금액 5억 원,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연 24%,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는 2011. 10. 10.자 이 사건 차용증, 2015. 8. 30.자 이행각서, 2018. 8. 29.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 D의 연대보증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²⁾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³⁾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 E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판결을 지연시켜주는 대가로 피고 B 측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 및 피고 D 사업수익의 15%를 합한 금액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 등 관련 처분문서(갑 제4, 6, 13, 15호증 등)는 원고가 위 소송대응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 D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3조, 104조 또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궁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276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 측이 이 사건 차용증 및 2015. 8. 30.자 이행각서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원고와 피고 D 측은 E과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원고가 피고 D의 대표이사를 맡는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 및 피고 D 사업수익의 1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갑 제7호증)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고, 피고 D가 J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도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 D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내용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들 주장과 같은 외관 창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하여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는 것이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민법 제103조, 제104조 또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인인 피고 D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피고 C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상 변제기(2014. 12.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2. 8. 31.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D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8.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 승인으로 중단되었고,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주채무라고 주장하는 J의 채무가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보증채무의 성격인 피고 D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 및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이행각서 기재상 J 채무의 변제기(2010. 12.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2. 8. 31.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6. 3. 5.경부터 2016. 5. 14.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 승인으로 중단되었고,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 B에 대한 3억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 상의 금액과 별도로 201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원고에게 연 최소 1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참조).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3) 판단 가) 우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 제1, 2항 기재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 제1, 2항에는 '피고 B은 농작물 판매 총 수익금에서 1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B은 총 수익금의 15%가 1억 원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1억을 지급하고, 총 수익금의 15%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15%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는 그 문언상 피고 B이 원고에게 농작물 판매 수익금 등 최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3년 동안'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 제1, 2항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피고 D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위 이행각서를 씌우로서 보증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2018. 8. 29.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를 발생시킬만한 거래나 경제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 제1, 2항은 피고 B이 피고 D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담보 또는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 제1, 2항 기재 채무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 금액 5억 원 중 1억 원의 보증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상의 금액 5억 원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피고 D 법인도장과 대표이사직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위 금원지급채무는 조건부 채무인데 피고 B이 농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B이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작성 과정이 피고 B의 궁박, 경솔 등으로 현저히 불공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이행각서 상의 채무가 'B이 농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농작물 판매수익금은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 달리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이행각서 제1, 2항 기재는 피고 D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관련 처분문서가 무효이거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제1, 2항 기재 역시 무효이거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처분문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 B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 5억 원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9. 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보증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청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도달되었을 무렵 이행의 청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병원

판사남명수

판사이도경

- 1)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D 중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인은 밝히고 있지 않다.
- 2)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 2021. 7. 7.부터는 연 20%이다.